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가단5123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김원태, 안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성목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0. 1. 13. 접수 제3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과 C 사이에 2022. 4. 1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2. 4. 12. 접수 제30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서의 발급 등

가) 원고는 C과 ① 2019. 3.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보증금액을 2,000만 원, 보증기한을 2024. 3. 2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② 2020. 6. 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보증금액을 2,000만 원, 보증기간을 2025. 6. 4.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 및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2)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채권취득

C은 D은행 및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21. 8. 25. E은행에 대출원리금 20,223,780원을, 2021. 10. 6. D은행에 20,240,032원을 각 변제하였다.

3) C의 처분행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부(父)인 F이 1996. 1. 12.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취득한 부동산인데, F이 사망함에 따라 2019.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① 2020. 1. 1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② 2022. 4. 11.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2022. 4. 12.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그런데 C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고 B이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고 F이나 그 상속인인 C에 대하여 단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통정허위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

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 B은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낙찰대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다가 2019. 2. 6.경 F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매매예약 당시인 2020. 1. 13.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2보증과 관련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2021. 8. 25.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매매예약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 역수상 분명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도 체결된 바 없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제1보증과 관련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1. 10. 6.에 이르러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윤희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2. 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가. 원고는 소외 C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C과 ① 2019. 3.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G,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4. 3. 20.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이라 합니다), ② 2020. 6. 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H,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5. 6. 4.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이라 합니다)를 각 발급해 주어, C이 제1보증과 관련하여 D은행으로부터, 제2보증과 관련하여 E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습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C은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청구권가동기를 각 종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관리정보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또는 C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때 등의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의 부실화 징후 시점에 발생하였고, 그 후에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다.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하는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동기를 각 마친 C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원고의 구상금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라. 사해행위성

C은 주채무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금사정 악화내용

청구권가동기를 각 종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 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관리정보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또는 C 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때 등의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C 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가 C 의 부실화 징후 시점에 발생하였고, 그 후에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다.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하는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동기를 각 마친 C 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원고의 구상금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라. 사해행위성

C 은 주채무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금사정 악화내용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구상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자신의 가치 있는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C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에게도 그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각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김해시 대 53㎡
2. 경상남도 김해시 대 261㎡

